



# 울 산 광 역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의 체불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의 체불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서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이를 위반 시에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며,  
\*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3.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1항에서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및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 금액을 합산한 금액
4.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만일, 이를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제82조제1항제8호, 제99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정명령 또는 시정명령 전 대금체불이 해소되더라도 처분 이력관리를 통하여 2년 이내 체불관련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되니 각별한 주의 필요

